

#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           |             |
|-----------|-------------|
| 회의소집통지일자  | 2016.11.07  |
| 의원수 : 11명 | 출석의원수 : 10명 |

1. 회의일시 : 2016년 11월 16일(수) 오후 5시

2. 회의장소 : 대전보건대학교 9동 2층 대회의실

3. 의원 출.결 현황

가. 출석의원 : 이명환, 장수진, 김택균, 양용원, 이명구, 김원수, 김홍수, 황철하, 김석주,

김태환

나. 불참의원 : 박종운

4. 회의안건

제1안 :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제2안 : 2016년도 제4차 학칙개정안 심의

제3안 :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학과 신설 보고

5. 회의내용

(의장)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제10조에 의해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인 10분이 참석하였으므로 2016년도 제4차 대학평의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대학평의원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의 안건인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안건에 대해서 먼저 주무부서의 설명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익진입니다.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교직원연금법 제47조(법인부담금) 제1항 내지 제3항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69조3의 1항에 의하면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게 되어있으나 법인이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절차상으로 사학연금 학교부담금은 매년 연단위로 기간 및 금액을 정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2016년 40%의 법인부담금을 학교법인 부담액에 계상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으로 2016년 예상되는 법인부담금은 8억 6천으로 예상되고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법인부담금은 4억5천 학교부담금은 4억1천 이상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앞서 11월 8일 개최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김홍수 의원) 전년도에 비해 법정부담금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  |            |  |            |  |
|-----------|--|------------|--|------------|--|
| 의장<br>이명환 |  | 평의원<br>김택균 |  | 평의원<br>김원수 |  |
|-----------|--|------------|--|------------|--|

(기획예산팀장) 법정부담금이 증가하는 이유는 퇴직자의 증가에 따른 퇴직수당의 증가, 직원 수의 증가 등이 요인이며, 이 현상은 의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한 부담비율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입니다.

(김석주 의원) 원래 법인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을 대학에서 부담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까?

(기획예산팀장) 원래 사학연금법에서는 법정부담금을 법인이나 학교(대학)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학교에서 부담하게 하는 것에 대한 제제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법인들이 오히려 공공연하게 법정부담금을 학교에 부담시키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을 사학연금법 제47조 제2항이 신설되면서 부담금을 학교에 부담시키는 것을 허용하되, 교육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적으로는 예전보다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인절차를 제대로 거친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이며, 우리대학의 경우에는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타 대학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대학에 부담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담금을 학교에 부담시키는 요건들이 더 까다로워 질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장) 기획예산팀장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에 의견이 있으신 의원들께서는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택균 의원) 부의안건이 법인이나 대학의 의견이 아니라 법적인 요건이나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장수진 의원) 동의합니다.

(양용원 의원) 재청합니다.

(의장) 부의안건에 다른 추가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사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에 대한 안건이 참석의원 전원이 찬성하므로 원안대로 확정 선포하고 다음안건인 2016년 제4차 학칙개정안 심의 안건에 대해 교무지원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무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교무지원팀장 김경한입니다. 2016년도 제4차 학칙개정안 심의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대학직제개편에 따른 결과를 학칙에 반영하고자 하며, 요즈음 이슈가 되고 있는 육아 및 창입휴학제도에 대한 내용을 학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정청탁법 시행에 따른 출석인정에 대한 교원들의 부담과 졸업학기 취업자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학칙에 이 부분에 대한 출석인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하며, 사망한 학생에 대해서 기존의 자퇴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직권으로 제적시킬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8조에서 국제교류센터를 삭제하고 제81조에 국제교류원과 의료시뮬레이션센터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대학의 직제개편에 따라 진행된 사항입니다. 학칙 제34조에서 사망, 실종된 학생을 제적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제43조 출석인정에서 출석인정기간이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내용을 삭제하여 졸업학기 취업자들이 출석인정을 받는데 대한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자 하며, 그 밖에 규정의 미비점을 제정비 하고자 합니다.

의장  
이명환

평의원  
김택균

평의원  
김원수

(김택균 의원) 제34조에서 자퇴신청하여 확정된 사람을 제적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왔는데 제적은 자퇴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내용검증을 하고 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무지원팀장) 실무적으로 자퇴를 다르게 행정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퇴제적처리를 하고 있어서 별 문제는 없는듯 합니다만, 추후에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제외하고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 의원) 같은 34조에서 사망, 실종 등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제적시킬 수 있도록 신설하였는데 이 조항이 사망, 실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는 사람에게도 포괄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그 뿐만 아니라 실종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인 용어가 아닌 법적인 부분을 포함하는 실종선고로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교무지원팀장) 네 이 부분 역시 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으로 법률용어로 수정하여 수정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수 의원) 제43조의 출석인정에서 단서를 삭제하면 학생들이 출석인정을 원하는대로 해달라고 할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무지원팀장) 이 부분은 학칙시행세칙에서 구체적으로 인정방법과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아무 근거없이 출석인정 해달라고 요청한다면 행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수진 의원) 제81조에서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문구 수정안을 올렸는데 이 부분은 부속기관의 의미에 부속교육기관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가든지 교육을 빼든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대학에는 부설기관의 기능이 별로 없는데 학생들에게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서 부설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명구 의원) 장의원님의 말씀은 현업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학에서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무지원팀장) 장수진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81조를 그대로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설교육기관의 신설은 학교 내부적으로 예산이나 조직개편 등의 검토를 거쳐 진행될 사항이므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총장님께 전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제34조에서 자퇴자의 제적처리는 없는 것으로 하고 사망, 실종 등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는 부분을 수정하여야 하며, 제81조의 부속(교육)기관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현행과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과 수정된 문구는 추후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금번 학칙개정안을 승인하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금번 학칙개정안에 관해 다른 심의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사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16년도 제4차 대전보건대학교 학칙개정안은 참석의원 전원이 찬성하므로 심의(안)대로 확정 선포합니다. 끝으로 교무지원팀장이 사회복지과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신설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 의장<br>이명환 |  | 평의원<br>김택균 |  | 평의원<br>김원수 |  |
|-----------|--|------------|--|------------|--|

(교무지원팀장) 위원님들께 기 보내드린 자료에 사회복지학과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20명의 학과신설에 의한 증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계속 학업 의지와 해당분야 전문인으로서의 비전과 열정이 있었고, 대학에서도 입학자원 감소의 대안으로 학생자원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내부적으로도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에서 대전시동구노인복지관의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여러 요건들이 충족되고 있어서 교육부에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신설이 요청된 사항으로 정원외 인원이지만 교육부의 승인이 확정되면 대학 전체적인 입학정원이 20명이 증가됨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의) 장) 미래를 대비하여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의원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육부의 승인이 있다면 신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의원들 반대없음을 표시하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록 간서명은 의장과 김택균 의원, 김원수 의원이 하기로 의원들간 합의하다. (회의를 종료하다. 18:03분 산회)

2016년 11월 16일

대전보건대학교 평의원회 의장 : 이명환

부의장 : 장수진

평의원 : 김택균

평의원 : 양용원

평의원 : 이명구

평의원 : 박종운

평의원 : 김월수

평의원 : 김홍수

평의원 : 황철하

평의원 : 김석주

평의원 : 김태환